강 사 료 등 제 수 당 지 급 세 칙

목 차

	제2조 적용범위	-1
	제3조 지급대상	-2
	제3조의 2 수당지급 제한	-2
	제4조 지급기준 등	-2
н	나 최	_ ე
т	- ~ ·····	

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

	1983. 9.15 제	정 (규정제 68호	2004. 9. 7	개정 (규정제677호)
	1984. 7.16 개	정 (규정제 92호	2005. 8.11	개정 (규정제708호)
	1986. 9.25 전	면개정(규정제140호	2005.12. 9	개정 (규정제726호)
	1988. 2.24 개	정 (규정제154호	2006. 7.10	개정 (규정제770호)
	1989. 6. 2	(규정제193호	2008. 3.28	개정 (규정제823호)
	1991. 3.20	(규정제242호	2009. 7.22	개정 (규정제862호)
	2000.10.30 전	면개정(규정제556호	2010. 3.11	개정 (규정제894호)
	2001. 4.26 개	정 (규정제567호	2014. 2.19	개정 (규정제1019호)
	2001. 8.29 개	정 (규정제577호	2016.12.27	개정 (규정제1121호)
2002. 9.11	제규정관리규정	정 개정(규정제613호) 2017.12. 4 제규정관리구	⁷ 정 개정(규정제1160호)
	2003. 2. 4 개	정 (규정제630호	2019. 2.18	개정 (규정제1212호)
	2004. 7.19 개	정 (규정제666호	2021. 8.20	개정 (규정제1342호)
			2022. 11.16	개정 (규정제1391호)

- 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, 각종시험, 간행물 제작 및 각종 위원회(심사, 심의, 자문위원회 등)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, 원고료 등 제수당 및 수수료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4., 2021.08.20>
- 제2조 (적용범위) ① 이 세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지급하는 강사료, 원고료 등 제수당 및 수수료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의 종류,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1.08.20>
 - ② 이 세칙에서 수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4.9.7, 2005.8.11, 2010.311, 2014.2.19., 2016.12.27., 2021.08.20>
 - 1. 강사료
 - 가. 대면교육
 - 나. 화상교육
 - 다. 온라인 콘텐츠 촬영 산출물
 - 2. 원고료
 - 3. 번역료
 - 4. 시험수당
 - 가. 출제수당
 - 나. 채점수당
 - 다. 시험실 감독수당
 - 라. 실기 · 면접 및 서류심사수당

- 마. 문제선정, 심의수당
- 바. 문제편집, 편찬수당
- 사. 시험진행수당
- 아. 시험장정리, 인쇄수당
- 자. 격리수당
- 5. 심사, 심의, 검사, 자문, 협의회 등 위원수당. 다만, 서면(전자매체 포함)을 이용한 심사, 심의, 검사, 자문, 협의회 등의 경우는 수당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- 제3조 (지급대상) 이 세칙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은 공단의 교육·시험·간행물 제작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무 제공 및 원고 등을 제출한 외부인사와 공단 임·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01.8.29, 2004.9.7, 2008.3.28, 2016.12.27>
- **제3조의2 (수당지급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한다. <전부개 정 2016.12.27., 2019.2.18.>
 - 1. 직원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위하여 강의업무(원고작성 포함)를 수행한 경우. 이 경우 자신이 속한 부서는 본사 처(실)·센터, 자동차안전연구원 처·팀·사무국, 지역본부·검사소·체험교육센터 단위로 적용한다.
 - 2. 공단 임·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강의업무(원고작성 포함)를 수행한 경우. 다만, 강의대상 인원 중 외부인원이 1/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- 3.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자가 현직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.
 - 4. 기관 주관의 회의 및 각종 심사(심의)·검토·평가 등 자기 소관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. 단,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는 참석하는 자의 직접 담당업무는 물론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며, 소속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한 경우도 포함하다.
- 제4조 (지급기준 등) 이 세칙에 따른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08.3.28>

부 칙 <규정 제68호, 1983.09.15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2호, 1984.07.16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40호, 1986.09.25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54호, 1988.02.24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93호, 1989.06.02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42호. 1991.03.20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56호, 2000.10.30.>

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67호, 2001.04.26.>

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77호, 2001.08.29.>

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613호, 2002.09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. 9. 16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요령)(생 략)

- 제3조(명칭변경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 시행중인 제규정의 명칭중 규칙은 규정으로, 요령은 세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제규정의 명칭을 변경한다.
 - 1. "강사료등제수당지급규칙"을 "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"으로
 - 2. "보안업무규칙"을 "보안업무운영세칙"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630호, 2003.02.04.>

이 세칙은 200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666호, 2004.07.19.>

이 세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677호, 2004.09.07.>

이 세칙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08호, 2005.08.11.>

이 세칙은 200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26호, 2005.12.09.>

이 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70호, 2006.07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세칙 시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시험수당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823호, 2008.03.28.>

이 세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62호, 2009.07.22.>

이 세칙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94호, 2010.03.11.>

이 세칙은 201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19호, 2014.02.19.>

이 세칙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21호, 2016.12.27.>

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>1160호, 2017.12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12호, 2019.02.18.>

이 세칙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42호, 2021.08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세칙에 따른다

부 칙 <규정 제1391호, 2022.11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04.7.19, 2004.9.7, 2005.12.9, 2006.7.10, 2008.3.28, 2009.7.22, 2010.3.11, 2014.2.19. 2016.12.27., 2019.2.18., 2021.08.20., 2022.11.16.>

지 급 기 준

1. 강사료(대면교육, 화상교육, 온라인 콘텐츠 촬영 산출물)

_		20.00	지급기준(단위: 원)			
٦	구분	내용 및 기준	대상	최초1시간	초과(매시간)	1일 상한액
	1급	전·현직 장관(급), 전·현직 특별시장, 전·현직 차관(급), 전·현직 광역자치 답급 단체장, 전·현직 공공기관의 장, 전· 현직 대학(교)의 총·학장 및 이에 준 하는 자	공직자	400,000	200,000	600,000
외			민간	400,000	200,000	-
부	2급	전·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, 전·현직 공공기관의 임원, 급 전·현직 대학(교)의 부교수 이상, 전· 현직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이에 준 하는 자	공직자	300,000	150,000	450,000
인 사			민간	300,000	150,000	-
	3급		공직자	200,000	100,000	300,000
		3급 │1급~2급 이외의 자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		200,000	100,000	_
			임원급		60,000	-
		내부 임직원	1·2급		50,000	_
			3급 이하		40,000	_

비고)

1) 강의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2. 원고료 및 번역료

				지급기준(단위: 원)	
구분		내용 및 기준	단위	외부인사	임직원
일반	1급	강사료 지급기준 중 "1급" 해당자	매 당 (200자)	12,000	ㅇ임원급 : 4,000 ㅇ직원
원고	2급	강사료 지급기준 중 "2급" 및 "3급" 해당자	매 당 (200자)	10,000	- 1 · 2급 : 3,500 - 3급 이하 : 3,000
교육	1급	강사료 지급기준 중 "1급" 해당자	매 당 (200자)	6,000	○임원급 : 2,500 ○직원
교재 원고	2급	강사료 지급기준 중 "2급" 및 "3급" 해당자	매 당 (200자)	4,000	- 1 · 2급 : 2,000 - 3급 이하 : 1,500

711		10 ml 17	1 61	지급기준(단위: 원)	
구분		내용 및 기준	단위	외부인사	임직원
	<u> </u>	문예지 또는 문학행사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작가	편 당	100,000	25,000
문예	(시시좌	그외 일반인 및 투고자	편 당	50,000	23,000
작품	산문 (소설,	문예지 또는 문학행사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작가	매 당 (200자)	10,000	3,000
	수필등)	그외 일반인 및 투고자	매 당 (200자)	6,000	3,000
만화		전문작가	편 당 (8컷기군)	200,000	
년 <u>위</u>		일반인	"	60,000	
	원 색 흑 백	전문작가	컷 당	50,000	
만평		일반인	컷 당	30,000	-
7-8		전문작가	컷 당	40,000	
		일반인	컷 당	25,000	-
		1. 외국어를 국어로	매 당 (200자)	3,500	2,000
번역료		2. 국어를 외국어로	매 당 (16절)	15,000	7,000
		3. 외국어를 외국어로	"	20,000	10,000

비고)

- 1) A4로 작성한 경우 A4 1면 기준 200자 원고지 3.5매로 산정
- 2)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1면을 200자 원고지 2매로 산정
- 3) A4 1면 기준 : 글자크기 14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 · 꼬리말 15
- 4) 전문자료 등 번역을 위해 외부전문번역업체와 「계약사무처리세칙」에 따라 계약에 의해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시험수당

	,			지급기준(단위: 원)		
구분		내용 및 기준	단위	외부인사	임직원	
출제수당		객관식(국어) 객관식(외국어) 주관식 기능실기형, 항공영어	문제당 문제당 문제당 문제당	8,000 15,000 30,000 30,000	4,000 8,000 15,000 15,000	
채 점	평 일	객관식 (수작업 기준)	문제당	20	10	

				지급기준(단위: 원)		
구틥	Ē	내용 및 기준	단위	외부인사	임직원	
		주관식	매당(8절)	1,500	800	
수 당	휴무일	객관식 (수작업 기준) 주관식, 전산채점	시간당	18,000	14,000	
7 3		논술	시간당	30,000	25,000	
	평일 휴무일	항공영어	건당	30,000	25,000	
시험실	평 일	시험실 입회 감시	시간당	14,000	-	
감독수당	휴무일		7172 0		14,000	
실기 · 면접	평 일	구술형(구술,서류심사위원)	일 당	150,000	50,000	
및 서류심사	70° E	작업형(실기시험위원), 항공영어	ㄹ 0	180,000	80,000	
수당	휴무일		시간당	30,000	25,000	
문제선정	평 일		일 당	150,000	50,000	
교정 및 검토수당	휴무일	문제 선정, 교정 및 검토위원		180,000	96,000	
문제편집	평 일	편집(편찬) 및 인쇄, 보안요원	일 당	150,000	50,000	
(편찬) 및 인쇄,보안	휴무일	sı	"	일 당	180,000	96,000
수당		,	시간당	-	12,000	
시험장 정리수당	휴무일	시험장정리요원	시간당	-	12,000	
시험진행	평일	 시험진행요원	시간당	14,000	-	
수당	휴무일	/시험선생 끄 편	기신경	14,000	14,000	
격리수당	평 일	시험문제 선정연금	일 당	30,000	30,000	
7410	휴무일		40	60,000	60,000	
 연금관리최	베이수다	직책수당	회 당	-	30,000	
	лш I б 	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	일 당	70,000	-	
비고) 1) 휴무일에 시간당 지급되는 수당은 4시간 이하일 경우 4시간으로 적용한다.						

4. 심사, 심의, 검사, 자문, 협의회 등 위원수당

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			
			지급기준(단위: 원)			
구분	내용 및 기준	단위	외부인사	임직원		
심사, 심의, 검사, 자문, 협의회 등 위원수당	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	일 당	70,000	-		
비고)						
1)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						

5. 적용기준

- 가. 제1호 강사료 지급기준에서 공직자라 함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나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, 공공기관장 및 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총액은 강의 등의 내용 및 기준에 관계없이 제1호 강사료 지급기준의 1일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다.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제2조제2항제5호 심사, 심의, 검사, 자문, 협의회 등 위원수당의 경우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수당을 초과하여 민간 외부인사에 지급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.
- 마. 외부인사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구분	1급	2급	3급
「여비규정」의 국내여비 지급기준	이사장	감사 · 이사	1 · 2급

바. 외부인사에 강사료등제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획 수립 시 외부인사의 위촉자격·기준을 명시하고, 대가 지급 시 자격·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·첨부·보관하여야 한다.